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7. 13 선고 2022가단1213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3. 6. 22.

판 결 선 고 2023. 7. 13.

주 문

1. 피고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6,459,600분의 9,339,854 지분에 관하여 2020. 8. 18.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6,459,600분의 9,339,85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20. 8. 20. 접수 제749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2020. 4. 18.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약정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

2/7 지분에 관하여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, 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D에 대하여 57,538,463원 및 그 중 23,988,477원에 대하여 2022. 8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대출금 채권이 있다.

나. E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20. 4. 18. 사망하였는데, D와 F은 자녀로서 각 7분의 2 지분의, 피고는 남편으로서 7분의 3 지분의 각 법정상속분을 취득했다. 위 3인은 2020. 8. 18.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20.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.

다. 협의분할 당시 D는 위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,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7, 9호증의 각 기재,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. 채무초과 상태의 D가 그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위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심화되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.

나.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2000. 11. 8. E에게 증여한 재산인 점, D와 F은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E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3,000만 원을 가지기로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별지 기재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0. 11. 8. 이를 E에게 증여한 것인 이상 위 증여 이후로는 이는 E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가 이를 단독 취득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한편,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E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등 명목으로 30,026,814원이 발생하였는데, 그 중 사망보험금은 25,000,000원으로 그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5,026,814원은 적립금 등 명목의 돈인 사실, D가 F 및 피고의 위임을 받아 대표수익자로서 보험회사로부터 30,026,814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. 위 30,026,814원 중 사망보험금 25,000,000원은 E의 사망을 원인으로 직접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고, 나머지 5,026,814원만이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.

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, 2 부동산(주택 및 대지)의 2020. 1. 1. 현재 개별주택가격은 32,200,000원이고, 순번 3 부동산의 2020년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46,300원/㎡(토지면적 92㎡를 적용하면 4,259,600원으로 계산됨)인 사실이 인정된다.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41,486,414원(= 5,026,814원 + 32,200,000원 + 4,259,600원)이고, 그 금액의 7분의 2인 11,853,261원이 D의 상속재산이다. D는 11,853,261원 중 2,513,407원(5,026,814원의 2분의 1)을 취득하였을 뿐 나머지 9,339,854원 상당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9,339,854원 상당에 한정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. 9,339,854원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각 36,459,600분의 9,339,854) 이 된다.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36,459,600분의 9,339,854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라. 피고는 당시 D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상대방, 즉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,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인용한다.

판사 최규현

(별지)

부동산의 표시

1. 강원도 철원군 G 대 299㎡
2. 위 지상 H호 조적조(벽돌)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9.62㎡, 지하층 6.61㎡(보일러실)
3. 강원도 철원군 I 대지 92㎡ -끝-

1) 9,339,854원 = 8,248,673원(별지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, 2의 부동산 가액 32,200,000원 × 36,459,600분의 9,339,854) + 1,091,182원(별지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의 부동산 가액 4,259,600원 × 36,459,600분의 9,339,854)